

2020회계연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의안번호 : 제2510호, 제2511호
- 다. 제출일자 : 2021. 5. 27.
- 라.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 제13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결산개요

가. 일반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 산 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 납 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수납율(% (B/A) |
|----------|--------|--------|--------------|--------------|--------------|-----------------|----------------|
| 2020 | 13,349 | 13,349 | 16,375 | 13,027 | 43 | 3,305 | 79.6 |

- 세입예산현액은 133억 49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63억 7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30억 27백만원을 수납하고, 43백만원은 불납결손하여 33억 5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9.6%임.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 이체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20 | 109,577 | 17,158 | 2,840 | 253 (-253) | - | 311 | 129,576 | 101,558 | 21,752 | 9,708 | 12,044 | 109 | 6,157 (4.8%) |

- 예산액 1,095억 7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1억 58백만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1,295억 76백만원으로, 이 중 78.4%인 1,015억 58백만원은 지출하고 16.8%인 217억 5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8%인 1억 9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61억 5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사용

- 예산 변경사용은 2건에 253백만원으로

-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194백만원

- 빗물펌프장 노후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58백만원

○ 예비비

- 예비비 사용은 2건에 2,840백만원으로

- 대동천 익수사고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 2,840백만원

(공탁금 1,600백만원, 2심 판결금 1,240백만원)

○ 이체

- 예산이체는 4건에 311백만원으로

- 수질오염원 관리(사무관리비) 6백만원

- 수질오염원 관리(기타보상금) 26백만원

-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278백만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59만원임.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명시이월 규모는 총 97억 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1,295억 76백만원 대비 7.5%이며, 사고이월 규모는 총 120억 44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295억 76백만원 대비 0.08%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61억 57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1,295억 76백만원 대비 4.8%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 비고 |
|------|---------|-------|---------|----|
| 2020 | 129,576 | 6,157 | 4.8 |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17억 84백만원
- 보조금 정산잔액 : 1백만원
- 낙찰차액 : 1억 65백만원
- 지출잔액 : 42억 7백만원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수납율(%) (B/A) |
|------|--------|--------|-----------|---------|-----------|--------------|--------------|
| 2020 | 11,000 | 11,000 | 11,000 | 11,000 | | 0 | 100.0 |

- 예산현액은 110억원으로 전액 지방채로 수납되었음.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 이체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년도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20 | 57,247 | 12,417 | - | 350 | - | - | 69,664 | 59,332 | 5,389 | - | 5,389 | - | 4,943 (7.1%) |

- 예산액 572억 4천 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억 1천 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96억 6천 4백만원으로, 이 중 85.2%인 593억 3천 2백만원은 지출하고 7.7%인 53억 8천 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1%인 49억 4천 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해당없음
- 변경
 - 예산 변경은 4건에 3억 5천만원으로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 2건을 감리비 등을 시설비로 2억 6천 2백만원 변경하였으며,
 - 신월빛물저류배수시설 설치 2건 시설비를 감리비로 8천 8백만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규모는 총 53억 8천 9백만원으로 예산현액 696억 6천 4백만원 대비 7.7%임.

5) 보조금 반납금

- 해당없음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49억 4천 3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696억 6천 4백만원 대비 7.1%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현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 비고 |
|------|--------|-------|---------|----|
| 2020 | 69,664 | 4,943 | 7.1 |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43억원
- 지출잔액 : 6억 4천 3백만원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 산 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 납 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수납율(% (B/A) |
|----------|--------|--------|--------------|--------------|--------------|-----------------|----------------|
| 2020 | 39,303 | 39,555 | 36,864 | 36,864 | 0 | 0 | 100.0 |

- 세입예산현액은 395억 55백만원으로 368억 6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368억 64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2) 세출결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 이체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20 | 39,303 | 252 | - | 39 (-39) | 10 (-10) | - | 39,555 | 32,746 | 78 | - | 78 | 1,189 | 5,541 (14%) |

- 예산액 393억 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2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95억 55백만원으로, 이 중 82.8%인 327억 46백만원은 지출하고 0.2%인 7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인 11억 89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55억 4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3) 예산 이용 · 전용 · 변경 · 예비비 · 이체

- 이용 : 해당없음
- 전용
 - 예산전용 사용은 1건 1천만원으로
 - 깨끗한 물관리(한강 수질개선) 1천만원임
- 변경
 - 예산변경 사용은 2건 39백만원으로
 - 깨끗한 물관리(한강 수질개선) 36백만원과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3백만원임
- 예비비 : 해당없음
- 이체 : 해당없음

4)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 다음년도 이월비는 계속비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규모는 총 7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2%임.

5) 보조금 반납금

- 보조금 반납금은 11억 89백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395억 55백만원 대비 3%에 해당함.

6)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55억 41백만원이며 이는 예산현액 395억 55백만원 대비 14%에 해당하는 규모임.

집행잔액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현액 | 집행잔액 | 불용률 (%) | 비 고 |
|----------|--------|-------|---------|--------|
| 2020 | 39,555 | 5,541 | 14 | |

- 발생원인별 내역

-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 33억 38백만원
- 지출잔액 : 43백만원
- 예비비 : 21억 6천만원

4. 검토 의견

가. 일반회계

1) 세입 결산

세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A) | 수납액 (B) | 불납결손액 (C) | 미수납액 (A)-(B)-(C) | 미수납액 처리 | | 수납율(% (B/A) |
|------|---------|---------|--------------|------------|--------------|---------------------|---------|-------------|----------------|
| | | | | | | | 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 |
| 2020 | 13,349 | 13,349 | 16,375 | 13,027 | 43 | 3,305 | - | 3,305 | 79.6 |
| 2019 | 14,943 | 14,943 | 23,190 | 19,666 | 142 | 3,382 | - | 3,382 | 84.8 |
| 2018 | 240,748 | 240,748 | 242,295 | 238,852 | 28 | 3,415 | - | 3,414 | 98.6 |

가) 개요

- 세입예산현액은 133억 49백만원이었으나 실제 163억 75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130억 27백만원을 수납하고, 43백만원은 불납결손하여 33억 5백만원이 미수납되었음. 수납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79.6%임.

나) 세수추계(결산서 p.21~27)

-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122.7%로 총 30억 26백만원의 차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9년도 결산 당시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차가 82억 47백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며, 일부 세입 중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낮았던 항목은 [표1]과 같음.

[표 1]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 편성목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 (b)-(a) | 사유 |
|-------------------|------------|--------------|-------|---------|--|
| 세외수입 | | | | | |
| 그외수입 (하천관리과) | 1,527 | 2,019 | 2,015 | 492 | ·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비계획적 수입 증가 |
| 지난연도수입 (하천관리과) | 73 | 3,343 | 123 | 3,270 | · 과년도 체납분으로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나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 기준 편성 |
| 국고보조금 (하천관리과) | 6,140 | 4,905 | 4,905 | -1,235 | · 국가하천유지보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미교부(1,235백만원) |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그외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액 15억 27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20억 19백만원으로 약 4억 92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등 불특정 수입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 다음으로 ‘지난연도수입’의 경우 예산액 7천 3백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33억 43백만원으로 약 32억 7천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징수결정액은 체납액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반해 예산액은 평균 징수액을 기준으로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매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납징수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2] 최근 3년간 지난연도수입 징수결정액 차이

(단위: 백만원)

| 연도 | 예산액(a) | 징수결정액(b) | (b)-(a) |
|------|--------|----------|---------|
| 2020 | 73 | 3,343 | 3,270 |
| 2019 | 78 | 3,336 | 3,258 |
| 2018 | 284 | 3,560 | 3,276 |

- ‘국고보조금’의 경우 예산액 61억 4천만원 대비 징수결정액 49억 5백만원으로 약 12억 35백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분 12억 35백만원은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¹⁾에 대한 보조금 환급액임.
- 본 사업은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시설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국토교통부에서 통합모니터링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금 사업²⁾으로,
-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0년 7월 변경내시³⁾하여 당초보다 총 18억 85백만원을 증액 교부받았으나,
- 국토교통부가 교부 후 검토결과 동 사업의 해당시설물인 수문 및 빗물펌프장⁴⁾은 「하수도법」을 적용받는 하수도시설로 서울

1)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국토교통부의 ‘2020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국가하천의 수문 및 배수시설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국토부에서 통합 모니터링하기 위해 추진하는 시스템 구축사업.

2) 국토교통부 ‘2020년 국가하천유지보수 예산 집행지침’ (관련규정 준수) 「하천법」 및 「하천의 유지보수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보 관리규정」, 「하천 유지보수 매뉴얼」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지관리 시행

3)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2271호(2020.06.23.) 변경내시
42억 55백만원 → 61억 40백만원(증 18억 85백만원)
- 국가하천 유지보수 추가정비 : 증 6억 5천만원
-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 증 12억 35백만원

4)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6. “빗물펌프장”이란 빗물을 제외지·하천 그 밖의 공유수면에 강제 배수시키는 시설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시의 경우 국비사업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⁵⁾하여 당해 12월 변경내시⁶⁾에 따른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보조금 12억 35백만원이 오류 교부에 해당한다하여 전액 환급한 것임.

[표 3] 수문 및 배수시설에 대한 관련법 적용 기준

| | |
|------------------------|---|
| ※ 「하천법」에 의한 수문 및 배수시설 | : 하천수를 배수하기 위한 시설물 |
| ※ 「하수도법」에 의한 수문 및 배수시설 | : 하수관로에 설치되어 하수(빗물+하수)를 배수하기 위한 시설물 |
| - 서울시에 설치된 수문 및 빗물펌프장 | 은 하수관로에 설치되어 하수(빗물+하수)를 배수하기 위한 <u>하수도시설물</u> |

- 이는 당초 국고보조금 배정기관인 국토교통부가 사업계획 수립 및 국비보전 대상사업기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우선 기인한다 하겠으나,
- 서울시 또한 국고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관련법령 기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바,
- 국고보조금 신청시 의욕만 앞세우기 보다는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처럼 교부받은 후 법령기준에 맞지 않아 환급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다) 미수납액(결산서 p.21~30)

- 물순환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미수납 총액은 33억 5백만원이며,

5)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4818호(2020.11.27.)

6)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4556호(2020.12.04.)

미수납에 따른 차년도 이월액 33억 5백만원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 |
|-------------|-----------|
| 차년도 이월액 | 33억 5백만원 |
| - 하천사용료 | 2천 8백만원 |
| - 변상금 | 8천 4백만원 |
| - 그외수입 | 4백만원 |
| - 시·도비반환금수입 | 1백만원 |
| - 지난연도수입 | 31억 88백만원 |

- 이 중 ‘지난연도수입(소송비용 과년도 체납액 등)’이 31억 88백만원으로 전체이월액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되는 소송비용 등의 고질적 장기 체납에 따른 것으로,
 - 지난연도수입의 징수결정액 33억 57백만원 중 실제수납은 3.8%인 1억27백만원 수준임을 감안 할 때 초기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징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진다는 의미므로 초기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예방함과 동시에, 담당자가 고질적 장기 체납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적 징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인센티브 부여 등)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음.
- 또한, 다음 [표 4]에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의 차년도 이월액 중 대부분은 “납세태만(29억 29백만원)”이 차지하고 있는데, 동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지적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체납 사유가 경제적 이유가 아닌 만큼 체납 징수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료됨.

[표 4] 일반회계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단위: 천원)

| | | |
|---------------|--|-----------|
| 미수납액(차년도 이월액) | | 3,305,285 |
| 무재산 | | 149,951 |
| 납세태만 | | 2,928,791 |
| 폐업 또는 부도 | | 32,796 |
| 기타 | | 193,747 |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 이체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20 | 109,577 | 17,158 | 2,840 | 253 (-253) | - | 311 | 129,576 | 101,558 | 21,752 | 9,708 | 12,044 | 109 | 6,157 (4.8%) |
| 2019 | 116,869 | 19,800 | - | 80 (-80) | - | 323 | 136,668 | 108,934 | 17,158 | 8,520 | 8,638 | 545 | 10,031 (7.3%) |
| 2018 | 444,015 | 27,184 | 165 | 61 (-61) | 20 (-20) | - | 471,364 | 441,894 | 19,800 | 13,496 | 6,304 | 4,919 | 4,752 (1.0%) |

가) 개 요

- 예산액 1,095억 7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71억 58백만원 등을 합한 예산현액은 1,295억 76백만원으로, 이 중 78.4%인 1,015억 58백만원은 지출하고 16.8%인 217억 52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0.8%인 1억 9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61억 57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49~59)

-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8%인 61억 57백만원이며, 불용율 30% 이상(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굴착공사 지하수 보전 및 안전관리방안 수립' 등 9건([표 5] 참고)에 해당함.

[표 5]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명(과) | 사 업 명 | 예 산 내 역 | | | |
|----|--------|-------------------------------|---------|-------|-------|--------|
| | |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내역 | |
| | | | | | 불용액 | 비율(%) |
| 1 | 물순환정책과 | 굴착공사 지하수 보전 및 안전관리방안 수립 | 100 | 59 | 41 | 41.3% |
| 2 | 물순환정책과 |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 200 | - | 200 | 100.0% |
| 3 | 물순환정책과 | 토양보전계획 수립 | 233 | 77 | 123 | 52.8% |
| 4 | 하천관리과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 | 431 | 299 | 131 | 30.5% |
| 5 | 하천관리과 | 하천사용료징수포상금 | 3 | 2 | 1 | 35.3% |
| 6 | 하천관리과 | 하천 편입토지 보상 | 1,638 | 34 | 1,604 | 97.9% |
| 7 | 하천관리과 | 국가하천 유지보수 | 6,975 | 3,277 | 1,235 | 17.7% |
| 8 | 하천관리과 | 증량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 330 | - | 330 | 100.0% |
| 9 | 하천관리과 |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하천관리 모니터링 (시민참여) | 26 | 18 | 8 | 30.3% |

- 이 중 ‘굴착공사 지하수 보전 및 안전관리 방안 수립’ 사업은 지하개발로 인한 지하수위 저하와 그에 따른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원 중 41.3%인 4천 1백 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2019년 사업으로 총 예산 2억원 중 2019년 12월 계약금으로 1억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1억원을 2020년으로 명시이월하여 그 중 5천 9백 만원을 준공금으로 지출하고 4천 1백 만원은 불용한 것임.
- 동 사업의 경우, 최초 입찰을 2019년 3월에 하였으나 계속된 유찰 끝에 3차 입찰인 2019년 11월에서야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정해졌고 2019년 12월 계약 당시 계약금 1억원 지급 후 잔

금 5천 9백만원만 남은 상태였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 잔금만 차년도로 이월하고 굳이 1억원을 명시이월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바, 의회 예산안 심사 당시 이를 조정할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음.

○ ‘하천 시설물 사회경제성 평가’ 사업은 신곡수중보 준치·철거에 따른 편익과 사회경제성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자 한 것으로, 예산현액 2억원 전액 불용하였음.

- 본 사업은 2020.2.24.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⁷⁾’에서 철거가 아닌 부분개방하는 방안과 함께 중앙정부, 유관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보류되었고,

- 서울시가 이후 부분개방 추진을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결과 철거 또는 개방(부분개방)에 대한 논의는 중앙정부 주도의 협의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2020년 12월 중앙정부에 협의체 구성을 건의하고 사업추진을 중단함에 따라 불용한 것임.

- 신곡수중보는 국토교통부에 소유권이 있고, 서울시는 수위 조절을 위한 가동보의 운영관리만을 위임받은 상황으로 동 시설

7)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개요

- 구성배경 : 신곡수중보 준치여부에 대한 학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 대립이 있어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울시의 신곡수중보 정책방향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구성
- 구 성 : 위원 15명(수리수문 4, 수질 3, 생태 3, 사회경제 5)
- 진 행 : 총 6회 전체회의 개최
- 논의과정 : 쟁점 선정 → 집중검토 워크숍, 한강탐방 → 분과의견 정리 → 종합 정리

물의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정책적 결정을 서울시가 중심이 되어 판단하는 것은 애초에 한계가 있었던 상황으로,

- 이처럼 사업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경우에는 예산부터 편성할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들과의 사전협의를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 추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정 사업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토양보전계획 수립’ 사업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⁸⁾에 따른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예산현액 2억 33백만원 중 52.8%인 1억 23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동 사업의 과업범위 중 ‘토양오염 현황분석 및 취약지역 조사·분석’ 내용이 당해연도에 병행하여 시행되던 ‘토양오염 실태조사⁹⁾’ 사업의 결과를 활용기로 결정함에 따른 것임.
- 이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 관련 타 사업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사료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타 사업들에 대한 교차검증을 통해 비효율적인 중복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임.

8)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제4항(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 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9) 2011년부터 매년 서울시의 토양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오염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시료채취 등의 용역 및 조사분석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유지관리’는 강서·양천 일대의 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억 31백만원 중 30.5%인 1억 31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이는 당초 동 시설이 2월 준공되어 3월부터 양천구에서 시설 물을 인계받아 유지관리 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준공이 5월로 연기¹⁰⁾됨에 따라 6월부터 동 시설을 운영하면서 3개월분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불용된 것임.
 - 이는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사료되나, 이러한 경우는 감추경 등을 통해 불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하천 편입토지 보상’ 사업은 지방하천의 제방공사 등으로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중 보상 미지급용지¹¹⁾에 대한 보상사업으로, 예산현액 16억 38백만원 중 97.9%인 16억 4백만원이 불용되었음.
 - 동 사업은 자치구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¹²⁾에서 보상결정

10) 공사기간 : 2013. 1. 7. ~ 2020. 2. 29(당초) → 2020. 5. 11.(연장)

11)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미지급용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행한 도로 및 하천에 관한 공공사업(이하 "공공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

12) 「서울특별시 도로 및 하천 편입미지급용지 보상 규칙」 제6조(자치구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미지급용지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2. 23.>

1. 보상대상여부

2. 보상의 범위

3. 예산조치 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된 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하천사업 편입 미지급 토지와 소송패소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함에 있어 당해연도에 소송진행 중 4필지, 감정평가 지연 4필지, 소유자 외국거주 1필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16억 4백만원을 불용한 것임.

- 이 같은 보상사업의 경우는 관련 소송이나 감정평가 등에 따라 보상시기가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편성시 보상이 확실히 되는 건에 대해서만 계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 한편, 미지급토지에 대한 보상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는 하나,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 또한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만큼, 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면밀한 감정평가를 통해 과잉 보상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당부된다 하겠음.

[표 6] 하천 편입토지 보상금 미집행 사유

| 연번 | 지번 | 면적 | '20.예산액 | 불용사유 |
|----|---|---------------------------------|-------------------------------------|--|
| 1 | 강남구 율현동 97-2 | 99㎡ | 82백만원 | 소송 미종결 (항소심 진행중) |
| 2 | 서초구 우면동 578-1 579-2 576-4 576-5 | 2,445㎡ 2,670㎡ 89㎡ 671㎡ | 405백만원 661백만원 22백만원 166백만원 | 감정평가 판단근거 자료 부존재로 감정평가 지연 |
| 3 | 송파구 장지동 707-3외 2 | 133㎡ | 250백만원 | 소송 미종결 (민사소송 진행중) |
| 4 | 중랑구 묵동 270-1 | 11㎡ | 13백만원 | 소유자 외국거주 중 - 코로나로 인한 입국불가로 협의 지연 |

-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예산현액 69억 75백만원 중 17.7%인 12억 35백만원을 불용하였는데,
 - 불용된 12억 35백만원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국가하천의 수문 및 빗물펌프장을 대상으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해 2020년 7월 변경내시로 증액 교부한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나,
 - 앞서 세입의 세수추계 부분에서 기술했던바와 같이 보조금 증액교부 이후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대상시설인 수문과 빗물펌프장은 하수도와 연결된 시설로 「하수도법」 적용을 받는 하수도 시설에 해당하여 국비사업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도 환급해 감에 따라 전액 불용된 것임.
- ‘중랑천수계 하천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 사업은 중랑천의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예산현액 3억 3천만원 전액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유지용수 공급주체인 중랑물재생센터의 전기료와 약품비에 해당하는 유지관리비를 ‘중랑천수계 유지용수공급 방안¹³⁾’에 근거하여 2013년부터 서울시가 보전해 주고 있던 사업이나,
 - 당해연도에 중랑물재생센터에서 확보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13) 시장방침 제207호 (2009.05.13.)

로 해당 유지관리비를 사용함에 따라 전액 불용한 것임.

- 이는 하천유지용수 공급시설 운영비는 하천관련 사업으로 일반 회계 편성 대상이며, 중량물재생센터에서는 향후 예산 집행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다)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은 없음

라) 예산이체¹⁴⁾(결산서 p.75)

- 예산이체는 4건에 3억 1천만원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20.11.1. 시행)에 따른 이체로 특이사항은 없음.([표 7] 참조)

14) '예산의 이체'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때에 예산을 이에 따라 변경시키는 것을 말함.

[표 7] 예산 이체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액 | 이체금액 | | 사유 |
|--------|------------|-----------|-----|------|-----|------------------------------|
| | | | | 감액 | 증액 | |
| 합계 | 4건 | | 311 | 311 | 311 | |
| 물순환정책과 | 수질오염원관리 | 사무관리비 | | | 6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0.11.1.시행) |
| 물재생계획과 | 수질오염원관리 | 사무관리비 | 6 | 6 | | |
| 물순환정책과 | 수질오염원관리 | 기타보상금 | | | 26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0.11.1.시행) |
| 물재생계획과 | 수질오염원관리 | 기타보상금 | 26 | 26 | | |
| 물순환정책과 |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 징수교부금 | | | 278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0.11.1.시행) |
| 물재생계획과 | 배출부과금징수교부금 | 징수교부금 | 278 | 278 | | |
| 물순환정책과 |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반환금 | | | 0.5 |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20.11.1.시행) |
| 물재생계획과 |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반환금 | 0.5 | 0.5 | | |

마) 예산변경 15)(결산서 p.79)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2건에 2억 53백만원으로 ‘취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에서 각각 시설비를 감리비로, 시설비를 시설비로 변경사용 하였음.

[표 8] 예산 변경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액 | 변경금액 | | 변경승인 일자 | 사유 |
|--------|-------------------------|------------|-------|------|-----|------------|-----------------------------|
| | | | | 감액 | 증액 | | |
| 2건 | | | 8,161 | 253 | 253 | | |
| 물순환정책과 | 취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401-01 시설비 | 621 | 194 | | 2020-08-07 | 설계 감리용역 시행을 위한 변경 요청 |
| | 취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401-02 감리비 | - | | 194 | | |
| 하천관리과 | 빗물펌프장 노후 변압기 개량 | 401-01 시설비 | 269 | 59 | | 2020-06-25 | 빗물펌프장의 노후 배수설비 개량을 위한 예산 변경 |
| |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 401-01 시설비 | 7,271 | | 59 | | |

15)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먼저, ‘회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의 경우 2020년 3차 추경(6월)시 편성한 시설비 2억 7천만원 중 1억 94백만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서울시 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에 따라 굴착 깊이를 8m로 설계 발주하였으나, 기본설계 결과 저류조 형태 변경 및 면적축소가 불가피 하여 굴착 깊이를 18.5m로 변경함에 따라 총 공사비가 296억원에서 619억원으로 크게 증액된 사업으로,
- 총 공사비가 300억원을 넘으면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사업관리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건설사업관리 용역, 설계의 안전성 검토 용역,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 등이 추가됨에 따라,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2020년 3차 추경시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 당해연도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행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로부터 시설비를 감리비로의 예산변경 요청이 있어 변경사용한 것임.
- 이는 추경 당시 시설비가 아닌 감리비로 편성했어야 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사업 시행부서와의 충분한 사전 소통 없이 예산을 편성함에 따른 변경 발생이라 여겨지는 바,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다음으로,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은 빗물펌프장 배수설비 중 사용연수가 경과된 펌프 및 재진설비 등을 개량해 주는 자치구 예산배정 포괄사업으로, 동일 단위 사업 내 ‘빗물펌프장 노후 변압기 개량’ 사업 시설비 5천 9백 만원을 변경하여 사용한 것임.
- 이는 본 사업의 예산배정 후 자치구별 사업추진에 따른 낙찰 차액이 2억 51백만원으로 예상되어 이를 적극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구 요청사업 중 후순위에 있던 ‘노량진 및 대방빗물펌프장 노후 설비 정비’와 ‘염창1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교체’에 추가 배정키로 결정하였으나,
- 이들 두 개 사업의 총사업비가 3억 1천만원으로 산정됨에 따라 부족한 5천 9백만원을 변경으로 융통한 것으로 예산의 적극적 사용의 일환으로 여겨지는바, 별다른 문제는 없다 사료 됨.

[표 9]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보강 추가요구사업 소요예산 내역

(단위 : 천원)

| 사업명 | 사업내용 | 소요예산 | 비고 |
|-----------------------------|--------------------------------|---------|---|
| 소 계 | | 309,658 | 본 사업 집행잔액 <u>2억 51백만원</u> 예상으로 추가요구사업 예산대비 <u>59백만원</u> 부족 |
| 염창1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교체 | - 350HP×1대 교체 | 250,000 | |
| 노량진 및 대방 빗물펌프장 플랩장치 교체 등 | - 1,100A×3개소 교체 - 노후 제진기 철거 | 59,658 | |

바) 예비비 (결산서 p.85)

- 예비비 사용은 2건에 28억 4천만원으로 ‘하천관련 소송 배상금’에서 발생하였음.

[표 10] 예산예비비 사용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실·국·과명) | 세부사업명 | 지출결정액 (A) | 지출액 (B) | 지출잔액 (A-B) | 처리일자 | 사 유 |
|-----------------|----------------|--------------|------------|---------------|--------------|----------------------------|
| 합 계 | | 2,840 | 2,840 | 0 | | |
| 하천관리과 | 하천관련 소송 배상금 | 1,600 | 1,600 | 0 | 2020. 01. 15 | 대동천 익수사고 관련 판결금(공탁금) 지급 |
| 하천관리과 | 하천관련 소송 배상금 | 1,240 | 1,240 | 0 | 2020. 11. 27 | 대동천 익수사고 관련 최종 판결금 집행 |

- ‘하천관련 소송 배상금’은 2012년 7월 강북구 대동천 익수사고¹⁶⁾ 관련 민사소송 공탁금 16억원과 2심 판결금 12억 4천만원으로, 이는 2심 최종판결(일부 패소)¹⁷⁾에서 서울시와 강북구가 각각 12억원씩 공동(총액24억, 서울시=50:강북구=50)으로 지급하라는 결정에 따라 예비비를 지출한 것임.

- 동 예비비 지출은 관련법인 「국가배상법」¹⁸⁾과 「민법」¹⁹⁾에

16) 2012.7.19. 강북구 수유동 북한산 백련사 입구 지방하천인 대동천에서 여자아이가 물놀이 중 보에 설치된 수문에 발이 끼어 익수사고를 당하여 주민들에 의해 구조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잃은 사고로, 사고 발생시 수문 3개중 우안측 1개가 개방되어 있었고 물놀이를 금지시키거나 안전관리를 하는 직원이 없었음.

17)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41886 손해배상(기)
당 사 자 : 원고-박○○외 3명, 피고-서울특별시외 1명
판결선고 : 일부패소, 배상금 24억 지급
- 원고책임 20%, 피고책임 80%

18)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9)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 규정에 따른 것으로 공동 불법행위시 연대배상 규정을 정하고 있는바, 영조물(營造物)²⁰⁾ 관리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서울시와 유지관리 위임기관의 지위에 있는 강북구가 공동배상금 부과 판결을 받은 것으로,

- 하천 보 수문을 개방함에 있어, 하천을 관리하는 직원 및 물놀이 금지하는 시설물이 없었던 것에 따른 예측 가능한 인재 사고로, 서울시는 상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러한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그림1] 사고전 수문현황



[그림2] 사고후 수문정비현황(2013)

사) 차년도 사고이월 (결산서 p.199~200)

- 일반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총 120억 44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1,295억 76백만원 대비 9.3%에 해당됨.

20) ‘영조물(營造物)’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인적·물적 시설의 통일체를 말하여 공공영조물이라고도 하며, 실정법상으로 영조물이라는 용어는 행정주체에 의하여 공동의 목적에 사용되는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건조물 등의 물적 설비를 의미하는 경우에 사용.

- 사유별 현황([표 11] 참고)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 지연 8건에 57억 17백만원,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1건에 7억 7백만원,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9건에 41억 6천만원, 본공사 및 용역지연 9건 14억 6천만원 등 총 27건(120억 44백만원)의 사고이월이 발생하였음.

[표 11] 사고이월 사업 사유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사유별 | 2020 | |
|----------------|------|--------|
| | 건수 | 이월액 |
| 사전절차 및 유관사업 지연 | 8 | 5,717 |
| 공사추진 중 장애발생 | 1 | 707 |
|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 | 9 | 4,160 |
| 본공사 및 용역지연 | 9 | 1,460 |
| 계 | 27 | 12,044 |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이상 또는 3억원 이상인 사업내역은 다음 [표 12]와 같음.

[표 12] 사고이월 30% 또는 3억원 이상 사업 현황(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 현액 | 사고 이월액 | 집행 잔액 | 이월률 | 사유 |
|-----|------------|----------------------|----------|-----------|----------|-------|--|
| 11건 | | | 16,344 | 7,832 | 103 | 47.9% | |
| 1 | 물순환 정책과 | 취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 621 | 605 | 16 | 97.5% | 기본설계 결과 총공사비 증가(296억->619억원) 하여, 설계감리용역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용역중단('20.5.8.) 후 11월 설계감리 용역과 함께 실시설계 용역 재개에 따라 연내 집행 어려움 |

| 연번 | 부서명 | 사업명 | 예산 현액 | 사고 이월액 | 집행 잔액 | 이월률 | 사 유 |
|----|------------|---|----------|-----------|----------|-------|---|
| 2 | 물순환 정책과 | 물순환회복 수립 기본계획 | 541 | 197 | 19 | 36.4% | 장기계속계약으로 시행중인 용역으로 금차(3차) 용역기간이 20.7.1.~21.2.28로 준공기한이 미도래되어 20년도 미집행금액에 대해 사고이월 |
| 3 | 물순환 정책과 | 물순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 용역 | 248 | 124 | - | 50.0% | 당초 '20년 10월 예정이었던 서울시 2040 물순환회복 기본계획 수립이 '21년 2월로 연기되어, 서울시 물순환 정책방향과 사업추진계획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용역 준공기한 연기 |
| 4 | 물순환 정책과 | 한강 수질관리 종합대책 | 350 | 175 | - | 50.0% | 일반경쟁으로 '20년 5월 발주하였으나, 2회 단독응찰로 유찰되었고, 단일응찰 업체의 제안서평가 후 '20년 9월 계약을 체결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움 |
| 5 | 하천 관리과 | 유수지 악취저감 용역 | 440 | 132 | - | 30.0% | 1차수 준공이 2021.09.28 로 용역수행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 |
| 6 | 하천 관리과 | 홍제천 상류 보행축 조성사업 | 250 | 106 | 35 | 42.2% | 준공기한 연기로 연내 집행 어려워 사고이월 필요 |
| 7 | 하천 관리과 | 증랑천 생태환경 개선 및 조설방안 마련을 위한 하상분석 용역 | 250 | 80 | - | 32.0% | 용역발주 유찰로 6월 용역 착수하여 연내 집행 어려움 |
| 8 | 하천 관리과 | 우이천(강북구) 쌍한교 재설치 공사 | 832 | 707 | - | 84.9% | 교통체계 변경 및 민원 발생으로 공사가 지연된 바 사고이월 필요 |
| 9 | 하천 관리과 | 도림천(영등포구)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 1,300 | 471 | 33 | 36.2% | 추가과업발생으로 인한 준공기한 연장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사고이월 필요 |
| 10 | 하천 관리과 | 도림천(관악구)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 7,944 | 2,474 | - | 31.1% | 공사구간 교통량 재검토 및 유관사업 협의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사업비 이월 |
| 11 | 하천 관리과 | 성내천(송파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 3,568 | 2,761 | - | 77.4% | 공사발주(10월), 감리 발주(11월)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움 |

- ‘취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사업은 강우시 발생하는 CSOs의 적정관리를 위한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6억 21백만원 중 97.5%인 6억 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앞서 세출의 예산변경에서 기술했던바와 같이 ‘서울시 CSOs 저류조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에 따라 굴착 깊이를 8m로 설계 발주 하였으나, 기본설계 결과 저류조 형태변경 및 면적축소가 불가피하여 굴착 깊이가 18.5m로 변경됨에 따라 총 공사비가 296억원에서 619억원으로 변경된 사업으로,
- 사고이월 사유는 진행 중인 실시설계 용역과 추경에 따른 신규 설계감리 용역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경우임에도, 설계감리 용역업체의 입찰이 2회 유찰된 끝에 2020년 11월에서야 수의계약으로 업체가 정해진바, 해당예산을 연내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유찰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라 하겠음.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물관리기본법」²¹⁾시행과 변화된 물환경 여건 및 정책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5억 41백만원 중 36.4%인 1억 97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의 경우, 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²²⁾의 수립이 당초 2020.10월 완료 예정이었으나 당해연도 12월로 연장됨에

21) 「물관리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물관리 정책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가 있다. (시행 2019년 6월 13일)

22) 「물관리기본법」 제27조(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 상위계획의 반영을 위해 과업기간을 당초 2020.12월에서 2021.2월로 연장하였고 이로 인해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었다고 사료됨.

- ‘한강 수질관리 종합대책’ 사업은 한강 및 지천의 수질 및 유량 모니터링을 통해 수질관리목표 설정과 종합관리방안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총 10억원의 사업비 중 1차년도 사업비인 예산현액 3억 5천만원 중 50%인 1억 75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고양시 어부들이 서울시가 정화 처리되지 않은 오염하수·분뇨를 무단으로 방류하고 있다는 민원에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측면과,
- 2014년 수립한 ‘서울특별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이 2018년까지를 수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수질 관리목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측면을 담고 있는 사업임.
- 본 용역 중 핵심 과업인 ‘강우시 서울시 하천의 수질·유량 모니터링’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지점과 조사방법²³⁾의 일부를 변경하면서 용역기간이 연장(1차계약 '20.12.31. →'21.12.31.)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고이월이 발생함.

23) 현장 수질 모니터링 지점 변경

| 구 분 | 당 초 | 변 경 후 |
|------|--------------------|----------|
| 조사횟수 | 청천시 360회, 강우시 600회 | 강우시 960회 |

- 과업의 정확성과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한 것에는 공감할만하다 하겠으나, 당초 용역과업 계획이 일부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는바, 향후 용역계획 수립 시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림 3] 수질 모니터링 대상지점(30개소) 최종 위치도

- ‘우이천(강북구)쌍한교 재설치 공사’는 치수적 안전성이 부족한 쌍한교를 재설치하여 집중호우 발생시 치수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8억 32백만원 중 84.9%인 7억 7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2018년 8월 집중호우시 쌍한교 범람위기로 인해 시급성이 대두되면서 긴급 추진한 사업으로, 2020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0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1년 말 준공을 예정으로 추진 중이었으나,

- 교량설치에 대한 설계 시, 교량규모의 확대(폭8m연장57m → 폭12m연장63.6m) 및 교량위치의 변경([그림4]참조)이 이루어졌으며,



[그림4] 도봉구 우이천 쌍한교 재설치 계획

- 이와 같은 설계에 따른 교통체계변경에 대해 도봉구의회 및 지역주민의 민원(2020년 11월)²⁴⁾으로 당해연도에 공사가 중지되어 예산을 이월시킨 것으로 2021.6월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임.
- 본 사업의 경우 우기철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되었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이처럼 설계변경과 주민민원 등에 의해 표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사

24) 도봉구 안○○ 외 1,634명 (민원내용)

- ▲쌍한교 재설치 공사는 현재 설치된 것과 동일하게 추진할 것
 - ▲현재의 쌍한교 교통체계를 필히 유지할 것
 - ▲쌍한교 재설치 공사 시 사선 교량으로 하지 말 것
 - ▲교량체계 변경 시 도봉로(의정부 방면)일대가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됨을 명심할 것
- 시사프리신문 “도봉구-강북구 ‘쌍한교 사선교량 재설치 두고 마찰” (2021. 02. 03)

료되는바, 주민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기철 폭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조속히 예방해야 할 것임.

- 참고로, 현재 서울시와 자치구(도봉구, 강북구)는 도봉구의회의 면담(2021년 4월 30일)을 통해 공사추진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한 상태이며, 향후 도봉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을 검토하여 면담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 ‘도림천(영등포구)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정비’ 사업은 도림천내 노후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보행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13억원 중 36.2%인 4억 71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동 사업 완료(2020년 5월) 후 발생한 사업비 잔액(집행잔액 3억 13백만원, 계약심사절감액 7천만원, 낙찰차액 8,700만원)을 영등포구의 ‘도림천·안양천 내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에 추가로 투입²⁵⁾(2020년 5월~2021년 12월)하면서 발생한 것임.

- 사업종료에 따른 집행잔액의 적극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충분히 공감할만하다 하겠으나 추가로 시행한 ‘도림천·안양천 내 하천시설물 정비 공사’의 경우 당초 예산서 세부내역 상에는 계상되지 않은 사업으로 의회 예산심사가 생략되었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추경 등을 통해 의회 승인을 득하여

25) 영등포구 치수과-21339호(2020.12.04.) 계약심사절감액 및 낙찰차액 사용검토
영등포구 치수과-18861호(2020.10.28.) 안양천 노후보행로 개선공사 계획

추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도림천(관악구)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은 서울대 앞 도림천 복개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도림천에서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보행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79억 44백만원 중 31.1%인 24억 74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서울시가 도로의 최소폭 확보를 위해 완전한 철거가 아닌 반복개 구조물로 존치할 계획이었으나 지역주민들의 완전 철거를 위한 지속적인 민원발생([표13] 참고)으로 공사가 ‘20.10 월 중지됨에 따른 것임.

[표 13] 민원 발생내역

| 일 시 | 민원요구사항 | 대응 및 검토내용 |
|------------------------|--|--|
| 2019년 3월 22일 | · 대학동 주민자치위원장 김○○외 3인 -도림천 완전 복원 건의 | · 반복개에 대한 장기적 검토에 따른 사업 추진임을 설명함 |
| 2019년 9월 18일 | · 도림천 생태복원 자문회의 10인 -복개구간의 완전 개방 요구 -자전거도로 지상설치 | · 자문회의 참석 후 본 사업 추진에 관한 면담 후 이해 설명 |
| 2020년 4월 ~ 2020년 8월 | · 이○○ 신부 -반복개 구간의 완전 복원 | · 담당자 민원사항 청취 및 설득 |
| 2020년 10월 22일 | · 도림천 생태복원 자문회의 14명 -도림천 복개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공사중지(재설계 요청) | · 감리단장, 현장대리인 자문회의 참석 후 해당사업 추진에 관해 설득 |
| 2020년 11월 23일 | · 열린구청장 면담(차○○목사 외 3인) -공사장 교각 설치협의 요구 -하천둔치 자전거 도로설치 반대 -교통문제 해결 건의 | · 민원상담실장, 하천팀장 참석하여 주민설명회 시 주민의견 반영사항 설명 · 교통문제 관악경찰서와의 협의 약속 |
| 2020년 11월 30일 | · 박○○ 외 77명 -복원구간내 편도 4차로→ 편도 3차로 축소건의 -공사구간내 교량 제거 -하천내 자전거도로 위치 이동 건의 | · 교통영향분석 결과 비용발생 사항 설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주민의견 반영 약속 |

- 이처럼 공사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계획과 주민의견이 서로

달라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당초 서울시가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데서 그 주된 원인이 있다고 여겨지는바,

- 사업의 계획수립 및 설계 단계에서 주민의견 수렴에 보다 만전을 기하여 예산의 과다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이처럼 민원 발생 사업들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내에 소진 가능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 참고로, 서울시와 관악구는 민원인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최초설계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고 2021.3.2.일 현재 공사를 재개한 상태임.
- ‘성내천(송파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은 성내천 고지배수로 구조개선을 통해 성내천~한강간 수질개선과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35억 68백만원 중 77.4%인 27억 61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2019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2020.1월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5월에 실시한 건설기술심의 조건부(수질모델링 등을 추가하여 실시설계)를 이행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6월에서야 설계가 완료되었고,
- 이어서 공중분리 검증위원회 개최(2020년 9월) 및 PQ평가기준 협의(2020년 10월) 등을 이행한 후 공사계약이 11월에 체결됨에

따라 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한 것임.

- 이처럼 다수의 사전절차를 포함하는 공사의 경우는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착공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할 것인바, 이를 감안하여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음.



[그림4] 몽촌펌프장(성내천 하류 배수갑문) ~ 성내천교(한강 합류부)



[그림5] 낙차공 현황



[그림6] 개선 계획

나. 도시개발특별회계

1) 세입결산

세입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A) | 수납액(B) | 불납결손액(C) | 미수납액(A)-(B)-(C) | 미수납액 처리 | | 수납율(%) (B/A) |
|------|--------|--------|----------|--------|----------|-----------------|---------|----------|-----------------|
| | | | | | | | 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 |
| 2020 | 11,000 | 11,000 | 11,000 | 11,000 | | 0 | | | 100.0 |
| 2019 | 25,796 | 25,796 | 25,000 | 25,000 | | 0 | | | 100.0 |

가) 개요

- 예산현액은 110억원으로 전액 지방채임.

2) 세출결산

세출결산현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이체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20 | 57,247 | 12,417 | - | 350 | | - | 69,664 | 59,332 | 5,389 | - | 5,389 | - | 4,943 (7.1%) |
| 2019 | 81,479 | 20,697 | - | 775 | | - | 102,176 | 83,208 | 12,417 | 1,410 | 11,007 | 83 | 6,469 (6.3%) |

가) 개요

- 예산액 572억 47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24억 17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96억 64백만원으로, 이 중 85.2%인 593억 32백만원은 지출하고 7.7%인 53억 8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1%인 49억 43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59~60)

- 도시개발특별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696억 64백만원 대비 7.1%인 49억 43백만원이며, 불용률 30%(불용액 3억원 이상 포함)에 해당하는 사업은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증대 사업’ 1건에 불용액은 43억원임.

[표 14] 불용률 30%이상 또는 불용액 3억원 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명(과) | 사 업 명 | 예 산 내 역 | | | |
|----|--------|-----------------------|---------|-----|-------|-------|
| | |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내역 | |
| | | | | | 불용액 | 비율(%) |
| 1 | 하천관리과 |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증대 사업 | 4,661 | 354 | 4,307 | 92.4% |

- ‘흑석 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증대 사업’은 악취발생에 따른 빗물펌프장 이전 요구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 61백만원 중 92.4%인 43억 7백만원을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은 흑석빗물펌프장(10년빈도)²⁶⁾이 1967년 설치되어 서울시 방재성능목표(30년빈도)²⁷⁾에 미달하고, 흑석재정비 촉진구역 개발중심지에 위치함에 따라 이전설치 하려는 사업으로,
- 2020.6월 ‘흑석 혁신거점 조성 사업 추진계획²⁸⁾’이 시행됨에 따라 동 펌프장 이전을 공공주택복합화 사업으로 통합 시행키로 결정함에 따라, 사유지 토지보상 사업비 40억원과 실시설

26) 시간당 강우량 75mm/h

27) 시간당 강우량 95mm/h

28)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7호(2020.06.19.)

계 용역비 3억원 등을 불용한 것임.

- 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책변동에 따른 부득이한 측면이 있음이 인정되나, 불용액 규모가 43억 7백만원에 달한다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추경 등을 통해서라도 타 시급성 사업에 투입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어야 한다고 사료됨.

다) 예산전용

- 예산의 전용사용은 없음.

라) 예산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마) 예산변경²⁹⁾(결산서 p.80)

- 금회 예산의 변경사용은 4건에 3억 5천만원으로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에서 2건을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에서 2건을 각각 융통하여 사용함.

[표 15] 예산 변경사용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액 | 변경금액 | | 변경승인 일자 | 사 유 |
|-------|----------------|-----------------|--------|------|-----|------------|---------|
| | | | | 감액 | 증액 | | |
| 4건 | | | 18,046 | 350 | 350 | | |
| 하천관리과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 401-01 시설비 | 5,104 | 1 | 0 | 2020-04-14 | 조달수수료지급 |
| | | 401-03 시설부대비 | 0 | 0 | 1 | | |

29) ‘예산의 변경’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 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함.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액 | 변경금액 | | 변경승인 일자 | 사유 |
|-------|-----------------------|-----------------|--------|------|-----|------------|-------------------------------------|
| | | | | 감액 | 증액 | | |
| 하천관리과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 401-02 감리비 | 752 | 261 | 0 | 2020-12-18 | 시설비 부족으로 공사기성금 지급을 위한 감리비 감배정 |
| | | 401-01 시설비 | 10,232 | 0 | 261 | | |
| 하천관리과 | 신월 빗물저류배수 시설 설치 | 401-01 시설비 | 1,462 | 47 | 0 | 2020-06-30 | 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지급 |
| | | 401-02 감리비 | 247 | 0 | 47 | | |
| 하천관리과 | 신월 빗물저류배수 시설 설치 | 401-03 시설부대비 | 43 | 41 | 0 | 2020-03-10 |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 부족분 확보 |
| | | 401-02 감리비 | 206 | 0 | 41 | | |

○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사업의 경우 시설공사 조달계약의 수수료 부족분 82만원 납부를 위해 세부사업내 시설부대비를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 지급하는 한편, 공사기성금 부족액 2억 61백만원 지급을 위해 감리비 잔액을 시설비 통계목으로 변경하여 예산을 융통함.

- 여기서, 당초 예산 통계목에 없던 새로운 비목을 신설한 것은 의회 예산심사가 생략된 것인바, 예산편성 과정에서 통계목에 대한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러한 사례를 방지해야 할 것임.

○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강서·양천 일대의 수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빗물저류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 준공을 앞두고 카-리프트 설치 및 유출지하수 재활용 공사 등의 추가로 인해 준공기한이 2020년 5월로 연장됨에 따라, 감

리비 부족분 8천 8백 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서 각각 융
통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01)

- 도시개발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은 8건에 53억 8천 9백만원으
로 총 예산현액 696억 6천 4백만원 대비 7.7%에 해당됨.
- 이들 사고이월 사업 중 사고이월 금액이 예산현액의 30%이상
되는 사업내역은 다음 [표 16]과 같음.

[표 16] 사고이월 30%이상 사업 현황(도시개발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 | 사업명 | 예산 현액 | 사고 이월액 | 집행 잔액 | 이월률 | 사 유 |
|----|-----------|---------------------------------|----------|-----------|----------|-------|---|
| 1 | 하천 관리과 | 불광천변 (응암동) 역류방지 배수문 설치 | 600 | 236 | 1 | 39.3% | 광역상수도 이설 불가에 따라 연계사업인 배수문 설치 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라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 필요 |
| 2 | 하천 관리과 | 신대방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공사 | 930 | 698 | 50 | 75.1% | 준공기한 미도래 및 지장물 이설에 따른 사고이월 필요 |
| 3 | 하천 관리과 |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타당성조사 용역 | 570 | 248 | 84 | 43.5% | 용역기간 360일로 '20.5.7. 발주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필요 |

- ‘불광천변(응암동)역류방지 배수문 설치’ 사업은 응암동 일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광천변에 역류방지구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6억원 중 39.3%인 2억 36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동 사업은 불광천변에 역류방지구문 2개소와 우수관구문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 2020년 5월 착공하였으나, 지장물³⁰⁾이설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비가 이월된 것임.
 - 이는 설계과정에서 현장 지장물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했음을 방증하는바, 설계과정에서 보다 과학적이고 철저한 현장 조사를 통해 예산사용의 비효율성을 방지해야 할 것임.
- ‘신대방 빗물펌프장 성능개선 공사’는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빗물펌프장 배수용량을 향상³¹⁾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9억 3천만원 중 75.1%인 6억 98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음.
 - 이는 동작구의 관련 사업방침서가 당해 4월 수립³²⁾되어 공사

30) 지장물 이설 및 유관기관 협의내역

- 한국전력공사 : 한전주 1개소(9627W681-41)
 - 기 설치 시설로 이설주체 및 비용산출 필요함, 2020년 11월 한전주 이설완료
- 공원녹지과 : 주목1주, 은행나무4주, 회양목
 - 지장수목 제거 후 해당 수목 재보식
- 도로과 : 가로등 2개소
 - 한전주 이설 시기에 맞추어 이설 병행
- 서부도로사업소 : 상수관로(D200~D1,000mm)
 - 상수관로 이설부분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청구, 상수관로 이설 협의

31) 강우빈도 10년(시간당 강우량 75mm/h) → 30년(시간당 강우량 75mm/h)으로 향상

32) ‘신대방 빗물펌프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시행계획’ 동작구 치수과-5017호(2020. 4. 16.)

발주 및 계약이 6월에 체결되었고 수방기간 공사 증지로 10월이 돼서야 공사착공이 이루어짐에 따라, 절대공기(240일) 부족에 기인한 것임.

- 사업방침서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사전절차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동 사업의 착공지연에 가장 큰 요인이라 할 것인바,
-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관련 방침서가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를 자제하여 향후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임.

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1) 세 입 결 산

세 입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연도 | 예산액 |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A) | 수납액(B) | 불납결손액(C) | 미수납액(A)-(B)-(C) | 미수납액 처리 | | 수납율(%) (B/A) |
|------|--------|--------|----------|--------|----------|-----------------|---------|-------------|-----------------|
| | | | | | | | 결손처분 | 다음연도 이월액 | |
| 2020 | 39,303 | 39,555 | 36,864 | 36,864 | | | | | 100.0 |
| 2019 | 30,827 | 32,818 | 34,067 | 34,067 | | | | | 100.0 |
| 2018 | 28,935 | 30,804 | 31,498 | 31,498 | | | | | 100.0 |

가) 개 요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95억 55백만원으로 368억 64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이 중 368억 64백만원을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됨.

나) 세수추계 (결산서 p.29~30)

- 금회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의 경우 세입예산액 대비 93.8%로 총 24억 4천만원의 차가 발생하였음.

[표 17]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가 과다한 항목들

(단위: 백만원)

| 편성목 | 예산액 (a) | 징수결정액 (b) | 수납액 | (b)-(a) | 사 유 |
|------------|------------|--------------|--------|---------|----------------------------------|
| 경상적 제외수입 | | | | | |
| 공공예금이자수입 | 129 | 88 | 88 | -41 |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
| 임시적 제외수입 | | | | | |
| 그 외 수입 | 0 | 0.035 | 0.035 | 0.035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기금 정산액 잡수입 처리 |
| 보조금 | | | | | |
| 기금 | 35,684 | 32,346 | 32,346 | -3,338 |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및 물이용부담금 징수수료 감소 |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 | | | | |
| 순세계잉여금 | 3,489 | 3,489 | 3,489 | 0 |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0 | 689 | 689 | 689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세입 미편성으로 초과 징수결정으로 처리 |
| 전년도 이월금 | 0 | 252 | 252 | 252 | 이월금은 세입예산 편성 대상이 아니므로 예산 현액으로 관리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보조금 (한강수계 관리기금전입금)’은 예산액 356억 84백만원 대비 징수 결정액은 33억 38백만원 감소한 323억 46백만원으로, 환경기초 시설 설치비 및 물이용부담금 징수수료 감소에 따른 것임.

2) 세 출 결 산

세 출 결 산 현 황

(단위: 백만원)

| 회계 연도 | 예산액 | 전년도 이월액 | 예비비 | 변경 | 전용 | 이용/ 이체 | 예산현 액 | 지출액 | 다음연도 이월액 | |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불용률) |
|----------|--------|------------|-----|-------------|-------------|-----------|----------|--------|----------|-----|-------|------------|-----------------|
| | | | | | | | | | 계 | 명시 | 사고 | | |
| 2020 | 39,303 | 252 | - | 39 (-39) | 10 (-10) | - | 39,555 | 32,746 | 78 | - | 78 | 1,189 | 5,541 (14%) |
| 2019 | 30,827 | 1,991 | - | - | 1 (-1) | - | 32,818 | 29,637 | 252 | 95 | 157 | 689 | 2,240 (6.8%) |
| 2018 | 28,935 | 1,868 | - | - | - | - | 30,804 | 25,768 | 1,990 | 195 | 1,795 | 1,324 | 1,721 (5.6%) |

가) 개 요

- 예산액 393억 3백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52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95억 55백만원으로, 이 중 82.8%인 327억 46백만 원은 지출하고 0.2%인 78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인 11억 89백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인 55억 41백만원이 발생되었음.

나) 집행잔액(불용액)(결산서 p.61~62)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불용률 30% 이상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예비비’ 1건으로 이는 당해연도 내 예비비 사용 요인이 발생 하지 않음에 따른 것임.

[표 18] 불용률 30%이상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예산내역 | | | |
|----|--------|-------|-------|-----|-------|--------|
| | | | 예산현액 | 지출액 | 불용액 | 비율 |
| 1 | 물순환정책과 | 예비비 | 2,160 | - | 2,160 | 100.0% |

다) 예산전용(결산서 p.71)

- 예산 전용사용은 1건에 1천만원으로 ‘기금사업관리비’ 국외업무여비 1천만원을 ‘잠실상수원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음([표 19] 참고).

[표 19]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액 | 전용금액 | | 전용일자 | 사유 |
|------------|----------|------------------|-----|------|----|-----------|--|
| | | | | 감액 | 증액 | | |
| 1건 | | | 502 | 10 | 10 | | |
| 물순환 정책과 | 기금사업관리비 | 202-03 국외업무여비 | 10 | 10 | | 2020-9-24 |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업무수행 불가로 잠실상수원 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등 구매 |
| | 잠실상수원 관리 | 201-01 사무관리비 | 492 | | 10 | | |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공무국외활동이 불가함에 따라, ‘기금사업관리비’의 국외업무여비 전액을 ‘잠실상수원 관리’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점검에 필요한 사무비용을 지출한 것에 따른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표 20] 잠실상수원 관리(사무관리비) 전용예산 사용계획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우로 훼손된 상수원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 5,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근거 : 1,000천원×5개소=5,000천원 ● 상수원보호구역 점검 및 민원 응대용 KF94 마스크 구매 : 2,5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근거 : 850원/장×100장/인×30명=2,550천원 ● 잠실상수원 관리 업무용 복사기 부품 구매 : 2,45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근거 : 1,500천원(퓨징유닛)+860천원(전사벨트)+90천원(폐토너통)=2,450천원 |
|--|

라) 예산이체

- 예산의 이체는 없음.

마) 예산변경(결산서 p.81)

- 예산 변경사용은 2건에 3천 9백 만원으로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천 6백 만원을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기타직보수로 변경하였고, ‘인력운영비’ 성과상여금 3백 만원을 ‘인력운영비’ 연금부담금으로 변경하였음([표 21] 참고).

[표 21]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 부서명 | 세부사업명 | 통계목 | 예산액 | 변경금액 | | 변경일자 | 사유 |
|------------|----------------|-------------------------|-----|------|----|------------|---|
| | | | | 감액 | 증액 | | |
| 2건 | | | 276 | 39 | 39 | | |
| 물순환 정책과 |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 수 | 50 | 36 | | 2020-9-18 | 기간제 근로자 퇴사 및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으로 인한 예산 변경 |
| |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 101-02 기타직보수 | 0 | | 36 | | |
| 물순환 정책과 | 인력운영비 | 303-02 성과상여금 | 49 | 3 | | 2020-10-20 | '20년 4분기 연금부담금 납부를 위해 예산 변경 |
| | 인력운영비 | 304-01 연금부담금 | 177 | | 3 | | |

-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은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³³⁾’에 따른 사업으로, 한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33)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에 따른 법적 의무 제도로써 1단계('13년~'20년)에 이어 2단계('21~'30년)제도 시행 준비 중

한강 수질 개선 및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 서울시는 그동안 기간제근로자를 2013.2월부터 채용(1명)하여 운영해 왔으나, 이를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채용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한 것임.
 - 이는 수질오염에 대한 연도별 변화와 그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나 계약단위가 1년인 기간제근로자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분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여 채용한 것으로,
 - 기간제근로자의 임용기간이 2020.4월까지였음을 감안하면 새로운 채용에 따른 당해년도 예산변경이 불가피했다 사료되나, 의회심사 후 이처럼 예산 통계목을 신설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인력운영비’의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법”)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징수율 상승³⁴⁾과 당해 퇴직인원이 연평균을 초과(2019년:725명→2020년:922명)함에 따라 4분기 연금부담금 부족분을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에서 융통한 것으로,
- 예상과 달리 퇴직인원이 증가한 점은 부득이하다 할 것이나, 법령개정에 따른 연금부담금 상승은 2016년 법개정³⁵⁾시 2020

34)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66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부담금(이하 “연금부담금”이라 한다)의 금액은 매 회계연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수예산의 9퍼센트로 한다. (2020. 1. 1 개정시행)
[2019년: 8.75% → 2020년: 9.0%]

35) 「공무원연금법」 (시행 2016. 1. 1.) (2015. 6. 22.,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기여율 및 부담률 인상(제66조제2항 및 제69조제1항)

공무원의 기여금을 현행 기준소득월액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연금

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이 예정된 바, 본 예산편성시 관련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므로 시정되어야 할 것임.

마) 예비비 지출

- 예비비 지출은 없음.

바) 차년도 사고이월(결산서 p.202)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차년도 사고이월 규모는 2건 7천8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 395억 55백만원 대비 0.2%에 해당되며 사고이월 30%이상 사업은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 사업 1건임.

[표 22] 사고이월 사업 현황(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 연번 | 부서 | 사업명 | 예산 현액 | 사고 이월액 | 집행 잔액 | 이월률 | 사 유 |
|----|------------|-------------------------|----------|-----------|----------|------|--|
| 1 | 물순환 정책과 | 수질오염 총량관리 사업 | 439 | 30 | 0 | 6.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부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고시 지연(당초 '18년 초→'20.7.28.)으로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용역 추진 일정이 지연됨. - 제2단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20.9월 발주하여 '20.12월 계약 체결하였고, 계약금 90,250천원 중 선금금 60,000천원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을 사고이월함. |
| 2 | 물순환 정책과 |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 | 100 | 48 | 5 | 4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울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지연으로 당초 용역 준공기한을 '20.12월에서 '21.1월로 연장하여 사고이월함 |

부담금도 현행 보수예산의 7%에서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로 단계적으로 인상함.

-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은 깨끗한 상수원을 확보하고 이를 보전·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잠실상수원 수질관리계획(2021~2030)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용역으로, 예산현액 1억원 중 48%인 4천 8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는데,
 - 이는 당초 본 용역에 반영되어야하는 과년도 용역인 ‘서울시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의 준공이 당초 ‘20.5월에 서 같은 해 12월로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 상기 과년도 용역의 지연 사유는 상위 기준에 해당하는 환경부의 ‘수질오염총량제 목표수질 고시’가 지연(당초 2018년→2020년7월)되어 발생한 것임.
 - 이처럼 관련 선행용역과 정부기준 등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 상위로부터 순차적인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 인정되나,
 - 본 용역 계획단계에서 관련 선행용역 및 그와 상응하는 정부기준 등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정밀한 검토가 부족했다 여겨지는바, 계획이나 기준을 수립하는 연구용역 등을 추진할 때는 선행용역 및 정부기준 등의 변동 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 없음